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 · 신장식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69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 및 회부	1
II . 제안이유 및 주문	1
1. 제안이유	1
2. 주문	3
III . 검토의견	4
1. 홈플러스 사태 개요	5
2.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회 논의 경과	10
3. 각 결의사항에 대한 검토	11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민병덕·신장식·정혜경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5. 6. 10.
3. 회 부 일 : 2025. 6. 11.

II. 제안이유 및 주문

1. 제안이유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 소비자, 노동자, 국민연금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본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총 인수금액 7조 2천억 원 중 자본금은 약 2조 2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5조 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대규모 부채를 홈플러스에 전가하였음. 그 결과,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2014년 152%에서 2024년 1,408%까지 급등함.

또한,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1조 원 투자 및 정상 경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오히려 이후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에 집중하였고, 지속적인 자산 매각과 점포 축소로 인해 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A3 → A3-)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현재 검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 기업회생절차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납품업체의 공급 중단, 상품권 사용 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직영직원, 협력업체 직원, 배송기사 등 약 10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음.

더욱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한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도 손실 위험에 처해 있어,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공적 자산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하였고, 현재까지도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노동자 생존권 보장,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의 손실 방지,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청문회 개최를 결의하고자 함.

2. 주문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촉구한다.
2.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Ⅲ. 검토의견

□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② 「국회법」 제65조¹⁾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임.

○ 결의안이란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임.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감사요구안 등)과 국회 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대내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국회의원윤리강령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외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결의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함²⁾.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동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고, 대내적으로 홈플러스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1. 홈플러스 사태 개요

- 홈플러스 사태는 2025년 3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촉발된 사건임.
-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금 중 금융차입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짐³⁾.
- 이후 막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주요 점포 매각, 신규 투자저조, 이커머스의 성장과 대형마트 규제 등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며, 재무건전성 악화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음.
- 그 결과, 2025년 2월 28일,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 높은 부채비율, 중단기내 개선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A3 →

2)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2024. 12.

3) 인수자금의 세부적인 구성 및 비율에 대해서는 MBK파트너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각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음.

A3-)하였음.

○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향후 단기 자금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단기 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⁵⁾.

○ 법원은 홈플러스 기업어음 등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다가오는 5월 자금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 당일(2025. 3. 4.) 선제적 구조조정⁶⁾을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⁷⁾.

□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는 투자자, 국민연금,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근로자 및 소비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초래하였음.

○ (단기채권 투자자) 홈플러스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차입금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이후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단기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음. 홈플러스의 단기채권(기업어음·단기사채·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⁸⁾) 규

4) 3월 4일은 납품·입점업체 대금 지급일

5)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2월 28일 이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준비하여 3월 4일 새벽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상 기업회생절차 준비에는 2~3개월이 소요되고, 연휴기간(3.1. ~ 3.3.) 동안 5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 2025. 3. 18.)

6) 선제적 구조조정: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려는 것

7) 그 이후 주요 경과

2025. 6. 12. 조사보고서(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음) 제출

2025. 6. 20. 회생인가 전 M&A 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 허가

2025. 7. 10.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2025. 7. 10. → 2025. 9. 10.)

8)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Asset Backed Short-Term Bond):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종류로, 대출

모는 총 5,899억원으로, 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1,970억원)과 법인(3,119억원)에게 대부분 판매⁹⁾되었는데,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홈플러스 단기채권 개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 위기에 처함.

-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2025년 2월에만 총 1,808억원 규모의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 사기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홈플러스가 2월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서도 해당 일자에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부동산 펀드 등 투자자) 한편, MBK파트너스는 핵심 입지에 있는 일부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해당 점포를 빌려 영업을 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을 사용하였고, 해당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홈플러스의 임대료와 점포 매각대금 등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왔으나¹⁰⁾,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점포에 대

채권,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어 발행되는 단기 채권)이며, 통상적으로 만기는 3개월임.

※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TB 구조: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면, 카드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카드대금 채권을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판매하면, 특수목적법인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하면, 카드사가 이를 특수목적법인에 전달하여 ABSTB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

9) 금융위원회,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2025. 3. 18. 정부위원회 보고자료

10)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 자금은 2,370억원, 홈플러스 점포를

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국민연금) 또한,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총 6,12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3,131억원을 회수하고, 9,000억원 규모의 미상환금이 있는 상태였으며¹¹⁾, 메리츠금융그룹의 담보채권(1.2조원) 등 선순위 채권 규모가 상당하여 한국리테일투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납품·입점업체)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채권자 간 공정한 배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의의 변제행위는 불가함에 따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의 발생이 우려되었음.

-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으로부터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¹²⁾와 조기변제허가¹³⁾를 얻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임직원 급여,

기초자산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모 리츠의 규모는 1,349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

11)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을 국민연금이 매입하였음. 이 중 국민연금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3,131억원(원금 942억원, 이익금 2,189억원)을 회수하였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미회수된 RCPS 투자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약 9,000억원의 미상환 자금이 있었음.

*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특정 조건에 따라 원금 상환과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우선주

12)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기업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영업을 위한 지출행위, 근로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의 일상적 지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

13) 조기변제허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일반적인 채권 변제 순서와 달리 특정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

임차료 등을 변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김병주 MBK 회장은 사재를 출연하여 소상공인 결제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규모·시기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¹⁴⁾, 아직까지 사재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홈플러스 직원 등) 또한,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17곳의 점포(가양, 일산, 시흥 등)와 수백여 개 입점 매장의 계약 해지 및 폐점 위기가 현실화되어 소상공인, 직원 등 민생 피해도 급증함.

-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추구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시장, 협력사와 납품업체,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임.

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 대체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유지와 협력업체 보호 등을 위해 상거래채권자(납품·입점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대상임.

14) 경향신문,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사재 출연' 지지부진, 2025. 4. 10.

2.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회 논의 경과

- 홈플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였음.
- 현안질의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단기채권의 발행 시점, 기업회생절차 준비 시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9명¹⁵⁾ 중 주요 증인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가 지적되었으며 향후 고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더불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그 후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홈플러스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며, 검찰조사 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15)증인(4): 김광일(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신영증권 사장), 강경모(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참고인(5): 김근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철한(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재홍(한국신용평가 대표), 김기범(한국기업평가 대표),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3. 각 결의 사항에 대한 검토

- 첫째, 결의안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촉구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가 단일 유통기업 위기를 넘어 금융시장(회사채·전단채 유동성)과 투자자, 입점업체와 협력사, 근로자, 지역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결의안은 촉구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는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불공정거래 의혹, 회계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¹⁶⁾, 검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 등

16)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 체제로 조사·법률·회계·IT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집중 조사 중임.

형사적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음. 국세청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자금 흐름, 탈세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따라서 각 기관이 촉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현안질의,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국회도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결의안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2.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 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위원회 의결¹⁷⁾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¹⁸⁾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17)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18)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이므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과는 구별됨.

법」 제65조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의결¹⁹⁾을 거쳐야 하므로, 동 결의안은 사실상 위원회 청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의미에 그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19)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